

# 자율운항선박 지침 개정

관련 규칙	시행 일정
자율운항선박 지침	2021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되는 선박

## ○ 개정 사유

1. 위험도 분석 대상 선박을 명확히 적용하여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.
2. 통신시스템, 선외지원시스템 등을 조합하여 원격으로 선내 운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도 부기부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## ○ 개정 사항

1. 이 지침을 적용하는 자율운항선박은 필요시 위험도평가를 수행하거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, 적절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건을 개정함.
2. 원격운영을 통한 기능 수행도 가능하도록 원격 개념을 도입함.
3. 선박전체가 아닌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AL 부기부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정함.
4. 자율수준 2의 시스템 구성 변경: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필수시스템으로 추가하고 자율운항 시스템은 운용 특성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함.
5. 낮은 수준의 자율수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급승인 절차에 따르고 높은 수준(AL3 이상)의 자율수준에 대해서는 위험도기반 선박설계 승인지침을 따르도록 요건을 개정함.

## ○ 영향 분석

- ✓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  
: 해당 선박에 적합한 위험도 평가 수행 및 보안 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.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  
: N/A